이혼및위자료

[의정부지방법원 2023. 4. 19. 2022르5696]

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)

【피고, 피항소인】 피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)

【사건본인】 사건본인 1 외 1인

【제1심판결】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7. 5.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

【변론종결】2023. 3. 15.

【주문】

]

- 1.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.
- 2.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. 5. 3.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.
- 3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- 4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,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,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,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,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이유]

】1. 인정사실
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2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,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계속 여부
-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(가사소송법 제34조),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비송사건은 그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하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.
-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지급 청구 부분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, 이를 가사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병합한 것이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그런데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. 5. 3.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,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은 피고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곧바로 종료되었다.
-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바, 그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재산분할 부분, 즉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은 위법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.
- 다만, 제1심법원이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이상,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(민법 제843조, 제837조 제4항. 제1심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없음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였다), 제 1심법원이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3, 4,항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에 대해 판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,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본다.
- 3.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4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
-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837조를 준용하는데(민법 제843조), 양육자의 결정, 양육비용의 부담,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되, 이 경우 그 자의 의사·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,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(민법 제837조 제1 내지 4항).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청구 부분이 원고의 2022. 5. 3.자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,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, 다만 원피고가 양육에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방을 벌여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,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.

가.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

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,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, 사건본인들의 나이,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,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,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.

나. 양육비

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.

원고와 피고의 직업, 소득, 경제상황,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,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2. 7.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,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.

다.

면접교섭

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.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나이, 양육 상황,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,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,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하며, 제1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정기(재판장) 박주영 김보현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